

##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

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공화국(이하 “아이슬란드”라 한다)은,

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(이하 “자유무역협정”이라 한다)이 이 협정의 서명일에 서명되었음을 상기하며,

이 협정이 자유무역협정 제2.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며,

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## **제 1 조** **적용범위**

이 협정은 다음 상품의 무역에 적용된다.

가.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(이하 “HS”라 한다) 제1류 내지 제24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V 및 V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품. 그리고

나.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II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품

## **제 2 조** **관세양허**

1. 대한민국은 아이슬란드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I에 규정된 대로 관세양허를 부여한다. 아이슬란드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II에 규정된 대로 관세양허를 부여한다.

2. 특혜 관세율이 이 부속서에 “B2”로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, 관세율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첫 번째 단계가 시행되면서 동등한 6단계로 점진적으로

철폐되고, 후속 단계는 2007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매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완전 철폐된다.

### 제 3 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

1.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적용된다. 그 부속서에서 “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”으로 언급된 것은 아이슬란드를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.

2. 이 협정의 목적상,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.

3.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2조에 불구하고,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당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로 간주되며 그러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충분한 공정 또는 가공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. 다만, 그러나, 공정 또는 가공은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.

### 제 4 조 대 화

양 당사국은 그들의 농산물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조사하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
### 제 5 조 추가적 자유화

양 당사국은, 당사국간 농산물 무역의 패턴, 그러한 상품의 특수한 민감성 및 양측 농업정책의 발전을 고려하여, 그들의 농산물 교역의 추가적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한다. 일방 당사국이 특정 상품

의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, 타방 당사국은 추가적 자유화를 협의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.

## **제 6 조** **자유무역협정 규정**

자유무역협정상 다음 규정들은 양 당사국 간에 이 협정에 준용된다.

제1.2조 · 제1.5조 · 제1.6조 · 제1.7조 · 제2.5조 · 제2.6조 · 제2.7조 · 제2.9조 · 제2.11조 · 제2.12조 · 제2.13조 · 제10.1조 및 제9장

## **제 7 조** **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**

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,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.

## **제 8 조** **수출보조**

일방 당사국이 제2조에 따라 관세양허의 대상이 되고 타방 당사국과 무역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보조를 도입하거나 재도입하는 경우, 타방 당사국은 그 시점에 발효되고 있는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까지 그러한 수입에 대하여 세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.

## **제 9 조** **부속서**

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.

## **제 10 조** **개정**

1.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.

2.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, 개정은 나중의 비준서·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.

## 제 11 조

### 발 효

1. 이 협정은 비준·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비준서·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양 당사국 간에 교환되어야 한다.

2.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간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에 발효된다.

## 제 12 조

### 이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간의 관계

이 협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국이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 남아있는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.

이상의 증거로,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.

2005년 12월 15일, 홍콩에서 영어본으로 2부 작성하였다.

대한민국을 대표하여

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